



# 경 찰 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홍보·계도 기간 내 교육 이수 독려 요청

## 1. 관련 근거

- 가.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2항 제6호, 제73조 제4항, 부칙 제3조('17.10.24. 공포, 제 14911호)
- 나.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및 별표 6
- 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6조의2
- 라. 교통기획과-2199('19.4.17.)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수수료 독려 요청”

2.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긴급자동차 운전 업무 종사자는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긴급자동차 운전 업무 종사자가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8만원 부과 대상임

3. 이와 관련, 경찰청에서는 '19. 4. 25.~7. 24.까지 3개월간 집중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합니다.

※ 홍보·계도 기간 중에는 아직 긴급자동차교육을 받지 못했더라도 계도를 하지만, '19. 7. 25.(목) 00:00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4. 각 기관 및 시설에서는 홍보·계도 기간('19. 4. 25.~7. 24.까지 3개월간) 내에 긴급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가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신규교육)을 조속히 이수하도록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의 경우, “나라배움터(<http://police.nhi.go.kr>)”에서 온라인 교육(교과명 : 긴급자동차 운전자교육)을 수강하면 교육이수 처리됨. 끝.

# 경 찰 청 장



수신자 대령경호처장, 국가정보원장, 국무조정실장(규제총괄정책관), 국무조정실장(법무감사담당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통신정책기획과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전파정책기획과장), 중앙전파관리소장, 우정사업본부장, 교육부장관, 국방부장관, 국방부장관(규제개혁법제담당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법무부장관, 법무부장관(검찰과장), 법무부장관(교정기획과장),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세청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관세청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검찰총장, 검찰총장(정책기획과장),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도로정책과장), 국토교통부장관(도로운영과장), 해양수산부장관, 병무청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산림청장, 조달청장, 기상청장, 통계청장, 농촌진흥청장, 방위사업청장, 문화재청장,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강원도지사, 대전광역시, 충청북도지사, 울산광역시, 충청남도지사, 경기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세종특별자치시장

경감 **백초현** 경정 **최대근** 교통기획과장 **황창선** 2019. 4. 25.

협조자

시행 교통기획과-2406 (2019. 4. 25.) 접수 응급의료과-2130 (2019.04.25.)

우 037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미근동, 경찰청) / <http://www.police.go.kr>

전화번호 02-3150-2650 팩스번호 02-3150-3851 / [bch100@police.go.kr](mailto:bch100@police.go.kr) / 대국민 공개